

제283회 임시회
2009. 9. 21(월)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9. 21.
행정소방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9월 3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09년 9월 4일

3. 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8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2009. 9. 15.)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신동인)

1. 제안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기 조성 및 식약청의 식·의약품 업무 지방 이관에 따른 전담인력 보장을 위해, 정원의 총수와 일부 직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 : 2,781명 → 2,794명 (증13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26명 → 1,439명 (증13명)

- 증16명 (일반직 4급 +2, 5급 이하 +12, 연구사 +2)

- 감 3명 (기능직△3)

※ 소방본부 및 소방서,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는 변동 없음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 일반직 : 증14명 (1,051명 → 1,065명)
 - 4급 증 2명 (59명 → 61명) ※ 본청 4급 +2 (42→44명)
 - 5급 이하 증12명 (982명 → 994명)
- 연구직 : 증 2명 (136명 → 138명)
 - 보건연구사 증 2명 (115명 → 117명)
- 기능직 : 감 3명 (263명 → 260명)
 - ※ 별정직, 지도직, 소방직, 교육공무원은 변경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

이번 제출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분장사무 신설과 지방식약청 사무중 지방이관사무의 증가에 대한 전담인력 보강하기 위해, 정원의 총수와 일부 직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 정원 총수의 증가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13명 증가한 2,794명임.
 - 증가요인으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사무의 신설, 지방식약청업무의 지방이관에 따라 집행기관공무원이 16명이 증가하고기능직공무원 3명이 감소하여 순증가 정원은 13명임.
- 직급별 정원조정은 총16명이 증가하고 3명이 감소함
 - 사무의 신설과 지방이관으로 일반직공무원 14명이 증가한1,065명
 - 연구직공무원중 보건연구사 2명이 증가(117명)한 연구직공무원 138명
 - 기능이 쇠퇴하는 기능직공무원 3명이 감소한 260명으로 조정함.

| 실 국 명 | 계 | 일반직4급 | 5급이하 | 연구사 |
|-----------|----|-------|------|-----|
| 계 | 16 | 2 | 12 | 2 |
| 균 형 발 전 국 | 9 | 1 | 8 | - |
| 보건복지여성국 | 5 | 1 | 4 | - |
| 보건환경연구원 | 2 | - | | 2 |

- 현안사업으로 발생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지방으로 이관되는 지방식약청 사무중 식·의약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원을 보강하는 것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치로 판단되며 단,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인력증원이 가능한 사유와 감소하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V. 토론 요지 : “생 략 ”

VI. 심사 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417 |
|----------|-----|

제출연월일 : 2009년 9월 3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기조성 및 식약청의 식·의약품 업무 지방이관에 따른 전담인력 보강을 위해, 정원의 총수와 일부 직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① 정원의 총수 조정 : 2,781명 → 2,794명 (증13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26명 → 1,439명 (증13명)
 - 증16명 (일반직 4급 +2, 5급 이하 +12, 연구사 +2)
 - 감 3명 (기능직 △3)

※ 소방본부 및 소방서,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는 변동 없음.

②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 일반직 : 증 14명 (1,051명 → 1,065명)
 - 4급 증 2명 (59명 → 61명) ※ 본청 4급 +2 (42명→44명)
 - 5급 이하 증 12명 (982명 → 994명)
- 연구직 : 증 2명 (136명 → 138명)
 - 보건연구사 증 2명 (115명 → 117명)
- 기능직 : 감 3명 (263명 → 260명)

※ 별정직, 지도직, 소방직, 교육공무원은 변경사항 없음.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체 : 붙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781명”을 “2,794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1,426명”을 “1,43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 청 | 의 회 | 직속기관 | 사 업 소 |
|---------------------|-------|-----|-----|------|-------|
| 총 계 | 2,794 | - | | | |
| 정 무 직 계 | 1 | 1 | | | |
| 도지사 | 1 | 1 | | | |
| 일 반 직 계 | 1,065 | - | | | |
| 2-3급 | 1 | | 1 | | |
| 3급 | 8 | 7 | | 1 | |
| 3-4급 | 1 | 1 | | | |
| 4급 | 61 | 44 | 7 | 4 | 6 |
| 5급이하소계 | 994 | - | | | |
| 별 정 직 계 | 21 | - | | | |
| 1급 상당 | 1 | 1 | | | |
| 5급상당이하소계 | 20 | 20 | | | |
| 연 구 직 계 | 138 | - | | | |
| 연 구 관 | 21 | | | 18 | 3 |
| 연 구 사 | 117 | - | | | |
| 지 도 직 계 | 24 | - | | | |
| 지 도 관 | 6 | | | 6 | |
| 지 도 사 | 18 | - | | | |
| 소 방 직 계 | 1,243 | - | | | |
| 소 방 정 | 10 | 2 | | 8 | |
| 소방령이하 | 1,233 | - | | | |
| 교육공무원계 | 42 | - | | | |
| 총 장 | 1 | | | 1 | |
| 교수·부교수·조교수· 전임강사 | 30 | | | 30 | |
| 조 교 | 11 | - | | | |
| 기 능 직 계 | 260 | - | | | |

※ 연구관, 지도관, 교수 등은 정원관리기관별로 규정

신 · 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781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426명</u></p> <p>2. ~ 4. (생략)</p> |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794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439명</u></p> <p>2. ~ 4. (현행과 같음)</p> |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⑤(생략)